

사항은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서울특별시와 사단법인 한국한센복지협회 서울특별시지부 및 사단법인 한성협동회 서울특별시지부간에 체결한 제2조 각호의 사업에 대한 협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703
----------	-----

2000년 11월 일  
건설위원회

1. 심사결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0년 9월 19일,  
서울특별시청 제출

나. 회부일자 : 2000년 9월 21일

다. 상정일자 : 제12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  
(2000년 11월 7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건설안전관리본부장 최재범)

가. 제안이유

- 일반시민이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건설기계를 임대하여 사용시에 그 절차를 간소화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도로관리사업소 건설기계를 임차하여 사용시 건설기계의 작업장소를 이동하고자 할 때 종전의 “도로관리사업소장 승인”에서 “도로관리사업소장에게 신고”로 간소화하여 임차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안 제12조제2항)
- 임차인이 임차한 건설기계에 대하여 “천재지변·공익사업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임차인에게 건설기계의 반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사합치에 의하여 결정됨이 타당함으로 삭제함. (안 제12조제3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용훈)

□ 내용별 검토

- 조례 제12조제2항의 개정내용은 도로관리사업소 보유 건설기계를 임대 받은 임차인이 작업조건의 변경 등에 따라 사용중인 건설기계의 작업 장소를 이동하고자 할 때의 절차를 종전의 “사업소장 승인”에서 “사업소장에게 신고”로 간소화하여 임차인의 건설기계 사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며
- 같은 조례 제3항의 “임차인의 사용기간 만료일 전이라도 천재지변·공익사업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사업소장이 해당 건설기계의 반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유사시 공익목적 달성을 위한 것이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임대 건설기계의 반납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규제완화를 요청한 2000. 7. 13차 서울특별시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기타 사항은 1999. 3. 15차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른 건설안전관리본부산하 사업소 명칭 변경과 관련하여 “건설관리사업소”를 “도로관리사업소”로 일치시키고, 징수 건설기계 사용료의 일반회계 납부를 의미하는 “잡수입”을 다른 법령 등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세입조치”로 용어를 정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 없음.

□ 검토의견

- 시 산하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건설기계의 임차사용 절차 등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규정을 완화 또는 삭제하여 이용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현행 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건설관리사업소"를 "도로관리사업소"로 하고, 같은조같은항중 "건설관리사업소장"을 "도로관리사업소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조제3항을 삭제한다.

②임차인이 작업조건변동에 따라 사용중인 건설기계의 작업장소를 이동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의 제목 "(잠수입)"을 "(세입조치)"로 하고, 같은조중 "잠수입"을 "세입"으로 한다.

제21조중 "잠수입된"을 "세입조치된"으로 하고, "충당하여야 한다."를 "충당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표 1의 전문중 "서울특별시 ○○건설사업소장"을 "서울특별시 ○○도로관리사업소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중 "서울특별시 ○○건설사업소장 귀하"를 "서울특별시 ○○도로관리사업소장 귀하"로 하고, 별지 제2호서식중 "서울특별시 ○○도로관리사업소장인"을 "서울특별시 ○○도로관리사업소장인"으로 하며, 별지 제4호서식중 "서울특별시 ○○건설사업소장(인)"을 "서울특별시 ○○도로관리사업소장인"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715	2000년 11월 일 도시관리위원회
----------	-----	------------------------

-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0년 10월 20일, 서울특별시장 제출
  - 회부일자 : 2000년 10월 23일 회부
  - 상정일자
    - 제123회 임시회 제2차 도시관리위원회 (2000년 11월 9일)상정, 의결
-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주택국장 양갑)  
가.제안이유

도시재개발법시행령 개정(2000. 6. 23)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나.주요골자

○ 도시재개발법시행령이 「당해년도 도시계획세 징수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재개발사업기금으로 적립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당해년도 도시계획세 징수총액의 100분의 15를 재개발사업기금으로 적립하도록 함.(안 제33조의2)

○ 재개발사업기금으로 적립되는 금액의 100분의 75를 주택재개발 세입으로 하고 100분의 25를 도심재개발 세입으로 하도록 부칙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를 개정함.(안 부칙 제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양재대)

□ 제안배경 및 경과

2000. 6. 23 도시재개발법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기 위하여 2000. 9. 5부터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친 후 제출된 것임.

□ 개정안의 주요내용 및 특징

○ 도시재개발사업기금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세 적립비율을 상향조정함.

안 제33조의2제4항은 도시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운영되는 재개발사업기금에 적립되는 도시계획세는 현재 총징수액의 100분의 10이나 2000. 6. 23 도시재개발법시행령 개정으로 100분의 10 이상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따르도록 개정됨에 따라 적립비율을 100분의 15로 상향조정하였음.

○ 재개발사업기금 용도의 배분비율을 조정함  
도심재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의 대부분이 상대적으로 신용상태가 우량한 대기업인 사업시행자에 대한 용자와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임을 고려하여 안 부칙 제3조를 개정, 재개발사업기금 사용배분비율을 주택재개발사업 세입은 현행 100분의 50을 100분의 75로 올리고, 도심재개발사업 세입은 현행 100분의 50을 100분의 25로 하향 조정하였음.